

# 제9회 건설안전세미나 토의 내용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와 건설안전관리자협의회가 '98년 6월 19일에 개최한 제9회 건설안전세미나는 주제발표가 있는 후 참석자와 발표자간의 질의 응답 및 의견발표가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 1 : IMF체제하의 건설안전 정책방향 - 임영섭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사무관
주제 2 : IMF환경하의 건설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 안홍섭 군산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주제 3 : 건설업 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향 - 이영섭 서울산업대 교수
<b>사회자 :</b> 건설안전기술협회 박무일 교수
<b>질의회시 및 의견발표자 :</b> 위의 주제발표자 3인
D건설 현장 J안전과장
S건설 부산아파트 현장 K과장
우리 협회 오지영 대전지회장
우리 협회 이승우 위원
우리 협회 차종진 회원

## 질의 및 의견 - D건설현장 J안전과장

우선 앞서 발표한 세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제발표한 내용에 질문이 있는 것 이 아니라 건설안전이 보다 잘 되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점에 대하여 임사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에 한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건설안전일원화 촉구** - 노동부와 건교부 건설안전업무 중 각각 유해·위험방지계

획서 및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가 내용상 중복되어 업무처리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건설안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인력 및 예산 낭비 가 크므로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촉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1000명 이상 사망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노동부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이유라고 여겨 집니다.

**2) 건설안전강화 필요** - 지난해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인해 현장 안전관리자 축소,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폐지로 기업주는 안전관리에 무척 소홀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권을 전제로 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안전관리부서 대폭축소에 따른 강력한 대책 필요** - IMF 체제하 경제악화,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안전관리 분야 기구축소, 부서폐지, 업무 통폐합, 인원감축 등으로 안전관리 업무가 위축, 악화되어 산업재해가 증가(안전신문 98. 6. 15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강력하고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사업주 안전경영의식 고취** - 건설안전 업무가 자율안전 쪽으로 바뀌어 가면서 사업주는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업주의 안전경영의식을 고취시켜 사업주는 인간존중과 작업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이라는 동질적 인식을 가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신인도 평가, 입찰참가제한의 강화** - 건설안전의 위치를 강조하려면 지금의 표준 안전관리비를 목적이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해율이 낮으면 +5점, 높으면 -5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신인도 평가, 입찰참가제한의 배점을 강화하면 안전관리자의 사기가 진작 될 뿐 아니라 건설안전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견을 임사무관님께 듣고 싶습니다.

**1) 본질적으로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 건설교통부는 구조물 안전에 관여하므로 두 업무의 확실한 구분이 됩니다. 다만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푸집동바리라든지 토류벽이라든지 어차피 양쪽에 겹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의 큰 테두리가 분명히 다른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전체를 뒤엎자는 논리입니다. 건교부와 노동부의 일원화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게 아니란걸 알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와 건설공사안전관리 계획서가 잘못 됐으면 그걸 고쳐나가야 하지 두개를 통합하자는 것은 곤란합니다. 현장에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입니다. 두 부처가 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산업재해은폐 부분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은폐신고, 조사 등을 통보받지만 어떤 제도가 시행되든 간에 사업주, 현장 안전관리자가 관심을 두지 않는 한 딱 한가지 제도로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건설안전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힘도 필요합니다.**

제가 노동부의 업무를 보면서 많은 민원을 받지만 건설안전강화의 필요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목소리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시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해율 관리가 산업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쪽으로 다들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노동부가 비공식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부서를 대폭 축소하기보다는 품질, 환경, 안전을 하나로 폐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개편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4) 신인도 평가, 입찰참가제한의 개인적 의**

**답변** - 노동부 임영섭사무관(이하 임사무관이라 칭함)

견은 지금의 제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주들이 신인도 평가에서 과태료로 -3점을 주는 것 하고 재해율 ±5점을 주는 것은 굉장히 큰 관심사이므로 법적 제재는 현재의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 S건설 부산아파트 현장 K과장 노동부에 서든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정기점검이나 기술지도가 없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현장에서 측벽이나 발코니에 간판을 쓰고 있으면서도 산안법에 기준이 없어 낙하물 방지망을 매라는 감독자가 있고 어떤 분은 필요없다고 하고, 나오는 분에 따라 처벌을 받고 안받고 합니다. 공단도 마찬가지여서 어디다 기준을 둬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가지 시설, 기준도 산업의 발달, 즉 기술발달에 따라 기준이 나와줘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표준규정이 빨리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임사무관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답변** - **임사무관** 신기술이 나오는데 법규정은 못 따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번 법으로 규정이 되면 온 국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시행기간이라든지 검증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신기술을 관계 규정에 두기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키스코코드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잘 지켜지고 유용하면 규정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간판을 사용하시면 작업발판은 안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방지망은 쳐야된다고 봅니다. 간판에는 낙하물 방지망에 의해서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추락방지망은 2차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안전난간이나 발판은 안해도 되겠지만 추락방지망은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장에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서류상이나 전화상으로 노동부에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 **오지영 대전지회장** 우선은 재해예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이영섭 교수님의 발표내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교수님께서 재해예방활동을 내실있게 수행하는 것이 경영의학에 시달리는 건설현장을 살리는 수단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셨는데 사실 여건조성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교수님의 발표 내용들이 해결됐을 때 내실있게 수행된다라고 보는데 이교수님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임사무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 **임사무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내실있게 한다는 것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면서 기술지도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재해예방활동이 현장수로 보아도 반수로 줄었습니다. 패트를 점검이 월 3회인데 사업주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되므로 지양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재해예방하는 것이지 포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교수님의 의견에 수긍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재해예방단체의 양적 확대로 기술의 질이 떨어지고 덤펑이 늘다는 것은 정부가 추정한 바로 되어 갑니다. 이것은 서비스 경쟁을 시키고 기술향상을 꾀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습니다.

제가 아는 대구 지방의 모 재해예방단체 경우 현장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매뉴얼을 개발하고 파악하고 노력합니다. 민영단체의 기술지도 실시율이 19%라고 했는데 이것은 스스로 찾아다니며 노력하는 것이 없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법인을 확대했습니다.

수수료 문제는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지 덤펑에 따라 기술의 질은 문제되지만 가격의 하락을 당장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어서 기술지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2회 이상 시정지시가 안될

때는 노동부에서 신고해서 처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노동부와 공단의 감독자들 중 노동부 감독관이 하는 얘기는 별로 신경쓰지 않지만 공단직원이 와서 기술적으로나 안전관리쪽으로 얘기를 하면 수긍이 가서 얘기를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지도기관에서는 기술과 서비스의 질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감독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지도를 월1회 횟수조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공사라는 게 진행돼서 준비기간 1개월 정도는 일을 많이 안하고 일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되어 일을 하므로 그렇게 개정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못된다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공, 착공을 기술지도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착공계에서 기술지도 계약서를 넣도록 하는 것은 안전만을 생각하면 효율적인지 몰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의견

- 오지영 대전지회장 앞서 발언한 것은 실무자로서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보다도 건축공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규제완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산업안전을 안하는 것이 규제완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실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기술지도 하는 사람들이 법적인 내용을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인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시켜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을 하려면 현장에 가서 굽실거리야 하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것에 정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불인다는 것은 제고가 요망됩니다.

또 한가지 이교수님께 이것만 보완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개의 재해예방전문기관이 2개의 청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인가를 내고 그 인근인 대전에 와서 기술지도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측면에서 가능한 한 1개의 청을 두도록 조정하면 어떻까요?

건수 책정에서 제조업을 하는 회사들은 1인당 30건, 건설현장도 마찬가지로 30건인데 제조업은 한번 만들어 지면 소멸될 때까지 이지만 공사현장은 1개 공사현장이 8개월 정도 걸립니다. 1인당 건수 산정할 때 12개월중 8개월은 3분의2에 해당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렇다면 1인당 건수산출시 예를 들어, 3억 이상~40억 미만공사 2건을 1건으로 보는데 30억을 계산하려면 3억 이상~40억 미만 60건당 소요인원 6명을 곱하면 360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12분의 8개월을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수책정이라고 봅니다.

#### 질의

- 이영섭 교수 통계에 보면 4000만원 이상~3억 미만 공사에서 중대사고가 많이나는데 기술지도를 제외시킨다면 그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 답변

- 임사무관 4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 고사현장은 실제로 소재파악이 어렵고 소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 현장에 나가 담당자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기술지도라면 전문기관이 기술서비

스를 하는 것인데 이 비용을 3억 미만 현장에서 기술수준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차라리 그 비용으로 현장에 안전모 하나 더 사주고, 안전난간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 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 3억미만 현장은 제외시키자고 한 것입니다.

요는 그 중대재해를 기술지도를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주택하나 짓는 정도에서 재해예방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견** - 이승우 위원 건교부와 노동부 같은 주최 측에 견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 교수님. 이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이 노동부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자들이 얘기를 듣고 현재 문제 점에 대해 답을 할 차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방향의 의견으로는 필요하지만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 점진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 **임사무관** 세미나 장소에서 저의 의견을 말한것이지 정책을 반여되거나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미나에서 의견을 말한 것 뿐입니다.

**의견** - 치종진 회원 기술지도를 다녀본 결과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지도사 기술지도 등의 여러 제도가 있는데 의식이나 건설현장의 관행은 후진적이나 법이나 제도는 선진적이기 때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나 기술지도도 채찍과 당근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의견** - 안홍섭 교수(건교부 노동부 통합의 문제) 건설안전 업무에 있어 건교부와 노동부의 일원화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논의 할 때 과거의 원칙을 몇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참고적으로 몇가지 말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근로자 안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목적달성을 수단으로서는 항상 기업이 생산을 원활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생산현장을 간소화하여 능률을 올리는 것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똑같은 제도라도 시행방법에 있어 생산력 규제의 내용이나 규정은 근로자 보호가 목적이므로 50% 이상 근로자의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산업안전 제반 정책을 관에서 주도 했는데 노동부와 안전전문가의 영향력이 발휘되었지 사업가의 의견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규제의 내용이나 규정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규제의 내용이나 보호의 차원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1:1로 합의가 안되면 절대 시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행정상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만 하고 그런 면에서 보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하고 보호주체인 근로자들이 소극적입니다. 제도시행방법 규제내용을 논의할 때 근본 초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노동부와 건교부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건교부 같은 경우 건설 모든 것을 콘트롤 할 수 있는 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주자, 감리자, 설계자, 시공자까지 콘트롤 하는 장악력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건교부의 자료 대부분은 그동안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연구기관에서 만든 것을 건교부가 재정리 한것 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안전에 관한 노하우는 건교부보다도 노동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와 노동부의 약점을 비교하면 건교부는 건설공사 전반 즉 실제로 불안전한 상태 등도 위험하지만 더 큰 위험은 공사비를 짜게 준다거나 공기를 단축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노동부가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또하나 문제는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분류는 크게 네가지가 있는데 근로자의 안전, 대구지하철사고에서 많이 다친 것 처럼 제3자의 안전, 시설물유지 관리하는 사람의 안전, 마지막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의 안전, 네 부류의 안전에 대하여 건설안전관리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로 산안법에서는 건설근로자 안전만 책임지는데 진행주 대교나 대구지하철 사고로 보아 현장내의 근로자와 현장밖의 제삼자의 안전문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한사람에게 안전관리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 관리를 정부에서 배려해야 합니다.

또하나 산안법의 한계는 근로자의 안전, 사용자 안전, 제3자 안전을 명확히 가릴 수 없습니다. 안전과학의 원용에는 차이가 없고 누구에게 적용하느냐가 차이입니다.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해 빌주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안법 가지고는 죽어도 통제가 안됨

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산안법은 제조업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건설업에 적용한 것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재료만 투입하면 몇초만에 나옵니다. 생산설비나 근로자는 제자리에 있고 재료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경우 재료는 최종위치에 있고 근로자와 생산설비가 움직이는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도 최소한 4개의 팀이나 회사 또는 관계자가 참여하여 생산자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안전기준 자체도 일반산업과 건설산업이 구분되어 있고 영국도 건설안전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건설안전기본법을 만들자고 주장한 적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다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외에도 굉장히 여러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법

안전대란 벨트, 로우프 및 그 부속품들로 구성된 것으로 작업중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구를 말합니다. 이 안전대는 근로자가 작업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사용용도에 맞는 안전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착용해 추락제해를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 벨트는 추락시에 빠지지 않도록 요골 근처에 착용하도록 합시다.
- 바를은 바르게 사용하고 벨트끝은 벨트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 클립·후크·카라비나 등은 이탈방지장치가 이중으로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 착용후 지상에서 각부분의 이상유무를 점검합니다.
- 로프는 25미터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설비나 구조물의 높이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게하여 사용합니다.
- 신축조절기 사용시 작업에 장애가 없는 한 로프의 길이를 짧게 하고 벨트의 끝과 작업복이 감기지 않도록 합니다.
- 예리한 각이 있는 경우에는 로프가 직접 예리한 부분에 닿지 않도록 설치합니다.